

20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9개 분야 385명)

● 전체

구분	경찰관【385명】														
	경감【3】	경위【20】		순경【362】											
계	변호사	공채		홍보		해수산계고		공채		합정요원		중국어		수사	해상 교통관제
		남	여	영상	디지털	항해	기관	남	여	남	여	남	여		
385	3	16	4	2	1	4	2	129	23	144	26	16	4	5	6
임용	본청(32)							지방청(353)							

● 지방청별 채용예정인원

채용 분야(인원)			계	증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계			353	50		116		47		67		73	
순경	공채		152	17	3	45	7	17	3	25	5	25	5
	합정요원	항해	102	15	3	28	5	13	2	15	3	15	3
		기관	68	10	2	19	3	9	1	10	2	10	2
	중국어		20	-	-	6	1	-	-	-	-	10	3
	수사		5	-		2		2		1		-	
	해상교통관제		6	-		-		-		6		-	

※ 본인의 거주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청으로 원서접수(응시지역 선택)

2. 시험 일정 및 절차

• 변호사 분야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일정공고	시험일정	장소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10. 26.(월) ~ 11. 9.(월) <15일간>					
1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적성·신체사	11. 13.(금)	11. 21.(토)	인천	-
2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서류전형	해당없음	12. 1.(화) ~ 12. 3.(목)	본청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 시험	경감 변 호 사	면접시험	12. 4.(금)	12. 14.(월) ~ 12. 18.(금)	본청	12. 24.(목)

• 쏠 분야(변호사 제외)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일정공고	시험일정	장소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8. 14.(금) ~ 8. 19.(수) <6일간>						
1차 시험	경위	공채채원사	필 기	10. 8.(목)	10. 24.(토)	응시 지방청	11. 13.(금)
	순경	공합정요채원사				목포	
		해상교통관제	서울	9. 18.(금)			
		해수산계고	서울	10. 16.(금)			
	중 국 어	필 실 기	8. 28.(금)	9. 5.(토)	9. 18.(금)		
홍 보 (영 상) 홍 보 (디 지 털)	실 기	9. 22.(화)	10. 3.(토)	10. 16.(금)			
			9. 4.(금)	9. 12.(토)	세종	9. 22.(화)	
2차 시험	경위	공채채원사	적성·신체·체력검사	11. 13.(금)	· 적성검사 : 11.21.(토) · 신체·체력검사 : 11.23.(월) ~ 11.26.(목)	인천	체력검사 불합격자 현장고지
	순경	공합정요채원사				응시 지방청	
		해상교통관제				목포	
		중 국 어				인천	
	해수산계고						
홍 보 (영 상) 홍 보 (디 지 털)							
3차 시험	쫑 분야		서류전형	해당없음	12. 1.(화) ~ 12. 3.(목)	본청, 응시 지방청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쫑 분야		면 접	12. 4.(금)	12. 14.(월) ~ 12. 18.(금)	본청, 응시 지방청	12. 24.(목)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일정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게시 예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경찰공무원법」 제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복권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여부는 사면·복권의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주요 법령은 <붙임 1> 참조

나. 응시연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변호사	경감	23세 이상 45세 이하	'80. 1. 1. ~ '03. 12. 31.
경위공채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85. 1. 1. ~ '05. 12. 31.
해수산계고	순경	17세 이상	'09. 12. 31. 이전 출생자
그 외 분야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5. 1. 1. ~ '0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제대군인 등은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다. 신체조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 검사의 평가기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1]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부합한 자 <붙임 7> 참조

※ 이 외의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라. 응시자격요건

- 경력, 자격증 요건 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8.\) 기준\]](#)
- 학위 요건 분야 [\[임용예정일\(2028.2.18.\(예정\) 기준\]](#) ※ 학위 취득 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감	변호사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경위	공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순경	홍보 (영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 력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순경	홍보 (디지털)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 력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관 SNS 운영, 온라인 홍보	

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해수산 계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순경	공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순경	합정 요원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 력	○ (공무원경력) 군(軍)에서 함정에 승조하여 항해 분야는 항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기관 분야는 기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장교 : 항해 또는 기관 분야의 지휘·운영·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직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사관·병 : (항해분야) 갑판, 조타, 전탐 (기관분야) 추진기관(내연·내기), 전기, 보수
		자격증	○ 항해 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 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순경	수사	학위	○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 관련전공: 경찰행정학(경찰학사, 경찰법학사, 경찰행정학사, 해양경찰학사 등 전공·학과·학위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법학
순경	중국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증	① 新BCT(B) 241점 이상 ② 新BCT(B) L&R 801점 이상 ③ 新HSK 6급 190점 이상 ④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⑤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26.12.18.)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증명서상 전체 이수과목 중 중국어 관련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해상 교통 관제	※ 필수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필수 요건	○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증	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의 승무경력만 인정하며, 면허 취득 전 승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는 <붙임 2> 참조

[응시자격요건(경력채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증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원서 제출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자격요건의 기재 착오, 중복 선택 및 미선택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의 산정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8.)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8.2.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대학 조교 경력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서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 포함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을, **프리랜서 경력**은 특정 기관·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 없이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해당기간 전체를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경력**은 관련분야 업무 수행 사실, 수행기간 및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분야 경력의 일부로 인정함

- **프리랜서 경력**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경력확인서, 결과물, 보수지급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계약기간, 수행업무,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수행 확인서, 결과물, 세금계산서, 보수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제 업무 수행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자료만으로 수행기간, 담당업무 또는 관련분야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하지 않음
※ 예시 : 공무원 경력 1년과 민간 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말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대표자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 시간(전임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시간제근무)의 경우 전임근무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함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시 :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위원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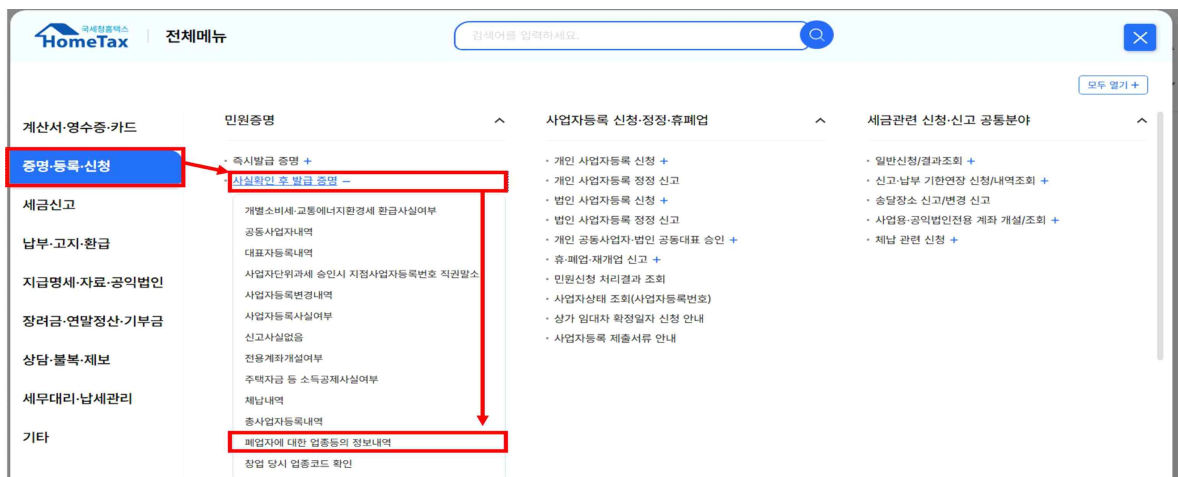
- ‘자격증+경력’ 요건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다만, 관계 법령에서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근무기간이 긴 경력) 하나만 인정함
-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①, ②, ③, ④)를 제출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원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오른쪽 상단에  버튼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 ‘민원증명’ 카테고리내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모두 열기 +

계산서·영수증·카드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당·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기타

즉시발급 증명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공동사업자내역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전용계좌개설여부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제남내역

종사업자등록내역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휴·폐업·재개업 신고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일반신청/결과조회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제남 관련 신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 (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채용분야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폐지된 자격증이라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 학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2028.2.18.(예정))까지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교육기간 중 대학 수업·시험·논문심사 등 개인 학사일정에 따른 별도의 일정 조정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학위 취득 일정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 ※ **학위 취득 예정자**는 채용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학위취득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임용예정일)까지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관련학과의 명칭이 공고문에 명시된 학과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계통 또는 유사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만으로 학위 또는 전공분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학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필기시험 범위

- 해양경찰학개론 <붙임 4> 참조
- 해사법규 <붙임 5> 참조
- 헌법 :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각론(통치구조론 제외)
- 형사법 : 형법 전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공소제기, 소송주체, 공판, 상소 분야 제외)

○ 필기시험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 2026. 10. 24.(토) 13:00

- 이의제기 : 2026. 10. 24.(토) 13:00 ~ 10. 27.(화) 13:00, 방법 별도 안내
- 확정답안 공개 : 2026. 10. 29.(목) 13: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및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에 답안 공개

- 성적공개 : 2026. 11. 4.(수) 10:00 ~ 11. 5.(목) 18:00

○ 합격자 결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동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결정

채용 분야		합격자 결정 방법
경위	공 개 채 용 공 개 채 용 해 수 산 계 고 합 정 요 원 수 사 해상교통관제	○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 경위공채 및 순경공채 분야 선택과목은 조정 점수 적용
순경	홍 보 (영 상) 홍보(디지털)	○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순경	중 국 어	①(필기)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②(실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총원

○ 1차 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제출기한 등 상세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① 제출서류 총괄표
- ② 응시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 ①경력증명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원(홈택스 발행)
 - (학위) 관련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⑥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⑧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_(해당자만)

- 합격자가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번역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응시자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화면캡처본 및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 중 채용이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원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 기간('26.12.24.~'27.1.14.) 내 신청.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전자우편(kcgexam@korea.kr) 제출 <붙임 11> 참조

나. 2차 시험(적성·신체·체력검사)

* **변호사 분야는 1차 시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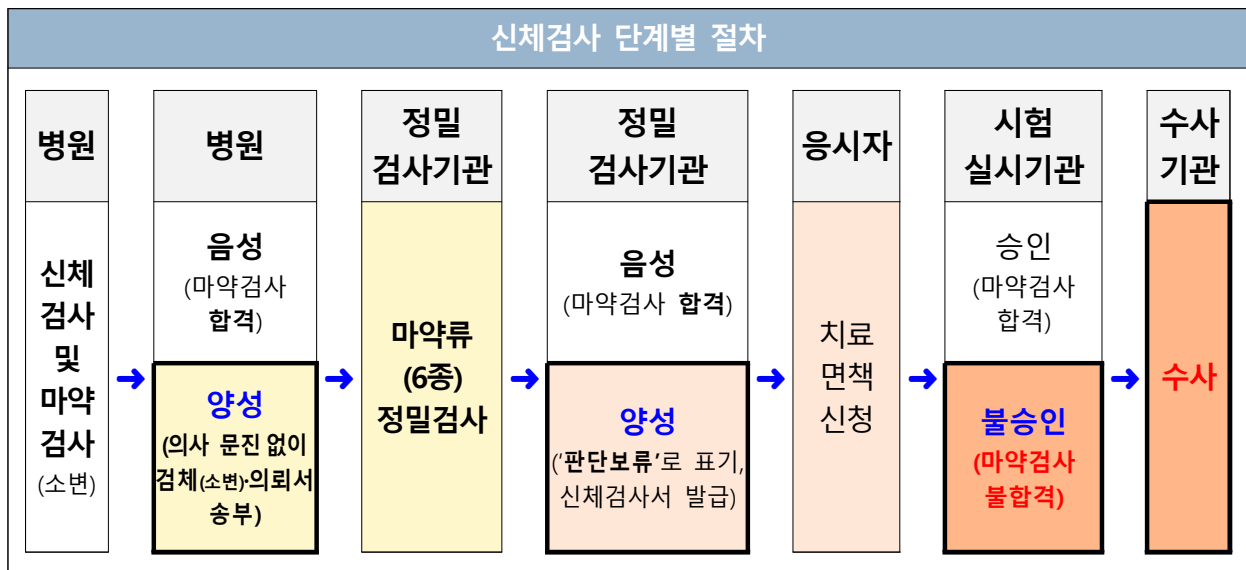
○ 종합적성검사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적성 및 인성 등을 검사하는 단계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1항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마약류 6종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 마약검사 가능병원 및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목록<별첨 1> 참고
-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 병원 방문 전 마약류 검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증, 응시표, 사진 및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부담임

- 모든 응시자는 신체검사 시 병원에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6> 참조
- 색각검사는 색각 보정용 렌즈, 색각 보정안경, 컬러렌즈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 색각이상자는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지 및 소견서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문신 등 신체조건 확인을 위하여 몸에 부착된 테이핑, 보호대 등은 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검사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체검사서는 종합적성검사 당일 현장에서 제출
-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개월이며, 적성·신체·체력검사 종료일('26.11.26.)까지 유효해야 함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담당의사 및 검진기관장의 서명 또는 인장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봉인된 상태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체검사서 봉투를 임의 개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색각이상자는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 결과지·소견서 등 추가 제출

-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결정<붙임 6> 참조
※ 위 기준 외의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신을 이유로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체력검사 당일 '문신관련 기초진술서' 작성 및 사진 촬영 후, 외부위원이 포함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 결정

○ 체력검사(종목식)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별표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2항
- (평가종목)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악력 ⑤ 50 m 수영
- (합격자 결정)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각 종목 실격 없이 총점 50점의 40% 이상인 2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붙임 6> 참조 단,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실격·기권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검사)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의 5%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도핑검사 실시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붙임 8> 참고

다. 3차 시험(서류전형)

* 변호사 분야는 2차 시험에 해당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예정일(학위요건인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가 확인되고, 응시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합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
- (가산점 확인)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에 면접시험 가산점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라. 4차 시험(면접)

* 변호사 분야는 3차 시험에 해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단계 집단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 (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평가(10점)
 - (2단계)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10점)
 - (가산점) 해양경찰 업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5점)
- (사전질문지) 모든 응시자는 면접시험 전에 ‘사전 질문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질문지는 응시자 가치관 및 공직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2단계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자격증 가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9항 [별표3]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붙임 9> 참고
 - 개인별 가산점은 '26.12.4.(금)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공개되며 수정기간('26.12.4.~12.7.)을 거쳐 최종 가산점수를 확정함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25점의 40% 이상인 1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변호사	○ 면접 100%
경위공채, 순경공채, 해수산계고, 함정요원, 수사, 해상교통관제	○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중국어	○ 필기 30%, 실기 35%, 체력 10%, 면접 25%
홍보(영상), 홍보(디지털)	○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

-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① 취업지원 대상자 → ② 필기시험 성적 → ③ 실기시험 성적 → ④ 면접시험 성적 → ⑤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성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로부터 1주일간
 - 최종합격자가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합격 취소 등)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의 일부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6. 8. 14.(금) 10:00 ~ 8. 19.(수) 17:00 <6일간>
 ※ 변호사 분야는 2026. 10. 26.(월) 10:00 ~ 11. 9.(월) 17:00 <15일간>

- 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접수마감일 17시 정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만 원서 제출이 완료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제출을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
 - [마이페이지]→[응시현황]→[원서접수내역] 메뉴에서 정상 접수 반드시 확인
- 응시원서 사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
- 응시수수료 : 경위·경감 7천원, 순경 5천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 →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 출력 : 2026. 8. 24.(월),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마이페이지 이용)
- ※ 변호사 분야는 2026. 11. 13.(금),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나. 원서접수 취소

- (1차) 8. 20.(목) 09:00 ~ 8. 22.(토) 18:00
- (2차) 9. 30.(수) 09:00 ~ 10. 2.(금) 18:00
- ※ 변호사 분야 취소 기간 : 11. 10.(화) 09:00 ~ 11. 12.(목) 18:00

다. 원서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

채용분야	서류목록	제출방법
변호사	제출서류 안내 <별첨 2-1> 참고	○ 원서접수 시 항목별 파일(PDF)로 제출
홍보(영상) 홍보(디지털)	제출서류 안내 <별첨 2-2> 참고	○ 원서접수 시 항목별 파일(PDF)로 제출

채용분야	서류목록	제출방법
경위공채 순경공채	1. 한국사능력시험 성적	○ (일반응시자) 한국사 인증번호 입력 후 실시간 연계 조회로 시스템 반영 ○ (취득예정자) 추가등록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의 한국사 인증번호 입력 후 실시간 연계 조회로 시스템 반영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 (사전등록자) 어학성적 사전등록 불러오기 후 실시간 연계 조회로 시스템 반영 ○ (사전등록 미등록자) 성적에 관한 정보(시험종류, 성적, 등록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취득예정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 후 추가등록 기간 내에 어학성적 사전등록 불러오기 후 실시간 연계 조회로 시스템 반영
해수산계고	학교장의 추천대상자 공문	[해·수산계 고교 경력경쟁채용 추천 안내서에 따름] ○ 원서접수 기간 내 학교담당자는 추천대상자를 제출 서류 포함하여 공문으로 발송 - ① 채용시험 추천서 ② 성적증명서 ③ 재적·졸업 입증서류 ④ 자격증 사본 등 ⑤ 졸업일(예정일) 등 - 안내서에 규정된 9개 학교 16개 학과의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가능하며, 공문과 별개로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함정요원, 수사, 중국어, 해상교통관제 분야는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없음

라.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은 불가하며, 자격요건 기재 착오 및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경위공채, 순경공채만 해당)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계급	채용분야	기준등급
경위	공개채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순경	공개채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6. 10. 2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하며 유효기간 없음

• 성적 제출 방법

- (일반응시자) 응시원서 작성 시 **한국사 인증번호**(예 : 38-123456) 실시간 연계 조회하여 시스템 반영
- (성적 취득 예정자)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예정으로** 하고, 추가등록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의 **한국사 인증번호**(예 : 38-178956) 실시간 연계 조회하여 시스템 반영

※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파일로 제출하지 않음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위공채	순경공채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평가점수 제외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26.10.2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인정 범위로 토플(TOEFL)은 응시 국가 제한 없이 인정, 토익(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지텔프(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토셀(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됨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 불가하여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이 아닌 타 기관에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영어성적이 사전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응시자는 기한 내(~ '26. 9. 30.)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서비스센터를 통해 직접 성적 이관 절차*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및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제출해야 함

*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서' 이용 <붙임 10> 참고

● 성적 제출 방법

- (사전등록 완료자)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등록 불러오기” 후 실시간 연계 조회하여 시스템 반영
- (사전등록 미등록자) 응시원서 작성 시 성적표에 대한 정보(시험종류, 성적, 시험일자,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

※ 사전등록 하지 않은 성적표는 필기시험일('26.10.24.)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

※ 입력한 정보가 실제 성적표와 다르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취득 예정자)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예정으로 하고, 성적 취득 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한 후 추가등록 기간내에 “사전등록 불러오기” 후 실시간 연계 조회하여 시스템 반영

※ ‘어학시험 성적표’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파일로 제출하지 않음

다. 검정시험(한국사·영어) 성적 추가등록 안내

- 추가등록 기간 : 2026. 10. 19.(월) 09:00 ~ 10. 23.(금) 18:00
- 추가등록 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한국사/영어 성적 추가등록]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검정과목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추가등록을 하여야 함

- 추가등록 후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응시자가 시스템상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됨
- 응시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에서 검정 시험에 대한 성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8 교육 및 임용

- 교육 입교예정일 : 2027. 2. 21.(일)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는 교육 입교예정일까지 입교하지 않거나, 채용후보자 등록 등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028. 2. 18.(일)
 - 임용예정일은 신임교육과정 운영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결원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 예정지에 임용되며, 지방청별 채용분야 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8년간 전보가 제한됨
- 중국어 분야는 함정에 우선 배치 예정임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9 안내사항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전형 중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구분된 실기시험의 경우 전 단계 종목에 응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에게 추가 합격 또는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또는 응시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해양경찰청	032-835-2336, 243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051-663-2416, 261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032-728-8916, 871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680-2416, 27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288-2521, 241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064-801-2416, 2621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법」 시행 예정 2027. 2. 28.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부칙<법률 제20646호, 2025.1.7.>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감	3명	변호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인천, 목포, 부산) ※ 희망지 고려 배치

주요 업무	○ 송치, 불송치, 자체종결 사건에 대한 수사심사 ○ 영장 신청 전 영장심사 업무 ○ 검찰처분 및 법원판결 결과 심층 분석 ○ 수사 관련 법령자문 및 인권보호 시책 지원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형사법리에 대한 전문지식, 리갈 마인드, 논리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협동의식, 긍정성
-------	--

필요 지식	○ 형법·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수산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 ○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력 및 적법절차 준수 검토능력 ○ 범죄사실 특정 및 법리 적용 등 수사미비점 분석·검토능력 ○ 인권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홍보(영상)	순경	2	해양경찰서

주요 업무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이를 활용한 홍보 ○ 대국민 홍보 소재 발굴 및 확산 ○ 영상물 D/B 관리 및 촬영 장비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방송, 영화, 광고(홍보) 영상 등 기획·편집 능력, 대내외 각종 교육 및 홍보 영상 촬영·콘텐츠 제작 능력
-------	--

필요 지식	○ 영상 기획·제작·촬영·편집 등 실무 능력 및 홍보 영상 기획 ○ 프리미어, 파이널컷 등 관련 프로그램 운용 능력 ○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확산 전략 이해 ○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 촬영용 드론을 활용한 영상·사진 촬영 및 운용 능력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홍보(디지털)	순경	1	해양경찰서

주요 업무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 대국민 홍보 소재 발굴 및 확산 ○ 이슈 대응 콘텐츠 기획·제작 ○ 디지털 콘텐츠 D/B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디지털 콘텐츠(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기획·편집 능력, 디지털 홍보 채널 분석 및 활용 능력, 홍보대상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운용 능력
-------	--

필요 지식	○ 디지털 홍보채널 특성 이해 및 콘텐츠 기획 관련 전문 지식 ○ 디지털 콘텐츠 기획·편집 실무능력 및 응용프로그램 활용 지식 * 생성형 AI,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관련 프로그램 운용 능력 ○ SNS 채널 운영 및 확산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관 SNS 운영, 온라인 홍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중국어	순경	20명	경찰서 및 소속 부서 ※ 함정 우선 배치

주요 업무	○ 외국(중국) 해양치안기관과 교류협력 업무 ○ 국제범죄 첩보수집 및 검거 활동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통역) 및 상황처리 ○ 기타 외국(중국) 관련 해양치안활동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	--

필요 지식	○ 해양경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선발대상 언어(중국어) 구사능력(말하기/듣기/쓰기) ○ 국제(중국) 해양환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응시 요건	자격증	① 新BCT(B) 241점 이상 ② 新BCT(B) L&R 801점 이상 ③ 新HSK 6급 190점 이상 ④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⑤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자격증에 한함
		학 위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국내학위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 :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 "응시자격요건"중 자격증 분야는 최종시험예정일, 학위 분야는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수사	순경	5명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수사부서

주요 업무	○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 범죄정보의 수집 및 처리 ○ 해양범죄의 분석 등 수사 행정 ○ 현장부서(함정·파출소) 근무 시 초동수사 담당
-------	--

필요 역량	○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형사법 및 수사절차 관련 법적 전문성 ○ 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성·청렴성 등 윤리의식 ○ 사건관계인 조사, 증거수집 등 사건처리를 위한 논리력, 분별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 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 해양수산 관계 법령 등 특별법에 대한 기본지식 ○ 범죄 수사를 위한 기타 법령 및 규칙 등의 이해
-------	--

응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 건	학 위	○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 관련전공 : 경찰행정학(경찰학사, 경찰법학사, 경찰행정학사, 해양경찰학사 등 전공·학과·학위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법학

※ "응시자격요건"은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상교통관제	순경	6명	지방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함정, 상황실 등

주요 업무	○ 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조직헌신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분석력, 치밀성, 협조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조정능력 등
-------	---

필요 지식	○ 선박교통관제법 등 해상교통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지식 ○ 선박항법 및 항해술을 이용한 선박 교통관리 ○ 표준해사영어 및 조난통신·통신운영 절차 ○ 해양사고·조난·오염·특수상황 관련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필수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필수 자격 요건	○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증	○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항해사 면허: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 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실기시험 평가기준 및 평가표

○ 실기시험 평가방법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기능시험 (실기)	홍보 (영상)	순경	▶ 정책홍보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 홍보소재 발굴 및 확산 ▶ 이슈 대응 콘텐츠 기획·제작 ▶ 디지털 콘텐츠 D/B 관리 *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	▶ 정책내용과 부합하고, 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능력 ▶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 창의성 · 정보전달력 · 완성도
	홍보 (디지털 소통)	순경	▶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홍보 ▶ 영상물 D/B 관리 *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	▶ 정책과 부합하고, 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영상제작 능력 ▶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 창의성 · 메세지전달력 · 완성도 ▶ 콘텐츠 기획력 및 스토리 구성 능력

○ 기능실기 평가표

▶ 홍보(영상)

홍보_영상(순경) 실기시험 평가표

응 시 분 야	홍보_영상 (순경)	응 시 번 호	실 기 번 호	성 명
------------	---------------	------------	------------	-----

필적감정용 기 재 란	(예시문) : 본인은 순경으로서, 동일인임을 보여드립니다. 본인필적 :	생년 월일
----------------	--	----------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득 점
		최상	상	중	하	최하	
과제의 이해 (50점)	과제 적합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50점
	창의성 및 정보전달력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결과물의 품질 (35점)	응용프로그램 활용수준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35점
	영상 완성도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발전역량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득 점 계		100 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 명	(인)
-----	--------	-----	-----

▶ 홍보(디지털)

홍보_디지털소통(순경) 실기시험 평가표

응시 분야	홍보_디지털 소통 (순경)	응시 번호	실기 번호	성명
----------	-------------------	----------	----------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상가응시자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 월일
--------------	--	----------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득 점
		최상	상	중	하	최하	
과제의 이해 (50점)	과제 적합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50점
	창의성 및 정보전달력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결과물의 품질 (35점)	응용프로그램 활용수준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35점
	매체 특성 반영 및 완성도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발전역량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득 점 계		100 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명	(인)
-----	--------	----	-----

붙임 4

해양경찰학개론 출제 범위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붙임 5

해사법규 출제범위

연번	법령명 ※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포함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	도선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	선박법
9	선박안전 조업규칙
10	선박안전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2	선박직원법
13	선원법
14	수산업법
1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9	양식산업발전법
20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21	어선법
2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3	어촌·어항법
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7	항만법
28	항만운송사업법
29	해사안전기본법
30	해상교통안전법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해양경비법
33	해양과학조사법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6	해양환경관리법
37	해운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및 질환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2.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약물 검사	약물(마약류) 종류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검출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 ·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 dB
	우: ()				우: ()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기타 특이사항		
문 신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4월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병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의뢰기관명		수검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요양기관번호		Chart No.		과명/병동		검체 채취 담당	(서명)
소변 채취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담당의사		(서명) ☎		
검사의뢰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마약류 6종 간이검사 결과(양성 약물에 체크)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 엑스터시(MDMA) ☐ 대마 ☐ 코카인(벤조일렉고닌) ☐ 케타민 ☐ 아편(모르핀)

소변 검체 채취방법

- 멸균된 깨끗한 plastic container (ex: 15 mL conical tube)에 보존제 없이 5~10mL 이상 채뇨
- 수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 채뇨 시 희석 또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는지 확인
-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는 1차 간이검사(선별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를 그대로 의뢰

정밀검사기관 (기관명) / (주소) / (FAX) / (TEL) / (요양기관번호)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병원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양경찰청 및 마약 정밀검사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채용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마약정밀검사기관 해양경찰청 및 중부서해남해동해제 주지방해양경찰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마약검사 포함), 신체검사 합격여부 판단, 수사기관 제공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 동의서>

상기 마약류 6종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정밀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밀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신청자(응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약 정밀검사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응시분야: 응시지방청: 20 응시번호: 성명: (서명)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40 이하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이상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40 이하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이상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50미터 수영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2]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악 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각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붕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수 영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악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실기·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stanozolol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morphine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oxycodone
-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양식)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기간(주/월)

응급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해양경찰청,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해양경찰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9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수상구조사 1급 이상	-	인명구조(요원)강사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 산·어 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 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 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예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복싱무예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 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 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 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 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 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 폐지,'25.12.21.)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지정취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대해서는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까지 자격을 인정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 신청(본인)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si@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1800-6634)으로 연락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ID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격증명	
수험번호(등록번호)	
취득일	
점수 · 인정 등급	
사전등록 기관	
타기관 사전등록 화면 (자격증명, 수험번호 등이 확인되는 사진첨부)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	----------	------	----------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